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안)

성동구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성동구청장

1. 공급현황

■ 공급 대상주택

[A동]						(단위 : m ² , 원)			
연번	주소	호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	용답동 226-7	201	36.55	10.28	46.83	14,280,000	186,100	23,810,000	310,100
2		202	33.80	9.51	43.31	13,210,000	172,100	22,010,000	286,800
3		203	28.87	8.12	36.99	11,390,000	148,300	18,980,000	247,200
4		301	36.55	10.28	46.83	14,280,000	186,100	23,810,000	310,100
5		302	33.99	9.56	43.55	13,280,000	173,000	22,140,000	288,400
6		303	29.67	8.34	38.01	11,700,000	152,500	19,500,000	254,100
7		304	34.25	9.63	43.88	13,380,000	174,400	22,310,000	290,600
8		401	39.94	11.23	51.17	15,610,000	203,300	26,010,000	338,900
9		402	46.79	13.16	59.95	17,560,000	228,800	29,270,000	381,400
10		501	29.91	8.42	38.33	11,550,000	150,500	19,260,000	250,900
11		502	39.30	11.07	50.37	15,040,000	195,900	25,070,000	326,500

[B동]						(단위 : m ² , 원)			
연번	주소	호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	용답동 226-13	201	33.46	7.59	41.05	12,940,000	168,600	21,570,000	281,000
2		202	36.62	8.32	44.94	14,160,000	184,500	23,600,000	307,500
3		203	33.74	7.66	41.40	13,050,000	170,000	21,750,000	283,300
4		301	33.46	7.59	41.05	12,940,000	168,600	21,570,000	281,000
5		302	36.62	8.32	44.94	14,160,000	184,500	23,600,000	307,500
6		303	33.74	7.66	41.40	13,050,000	170,000	21,750,000	283,300
7		304	30.24	6.88	37.12	11,800,000	153,800	19,670,000	256,300
8		401	33.46	7.59	41.05	12,940,000	168,600	21,570,000	281,000
9		402	36.62	8.32	44.94	13,730,000	178,900	22,890,000	298,200
10		403	33.74	7.66	41.40	12,650,000	164,800	21,090,000	274,700
11		404	30.24	6.88	37.12	11,450,000	149,200	19,080,000	248,600
12		501	33.46	7.59	41.05	12,550,000	163,500	20,910,000	272,400
13		502	32.01	7.27	39.28	12,120,000	157,900	20,200,000	263,200
14		503	25.21	5.72	30.93	9,540,000	124,300	15,910,000	207,200
15		504	26.97	6.12	33.09	10,210,000	133,000	17,020,000	221,700

※ 부대시설: 주차장 14면, 다목적 회의실 2실(34.84m², 30.33m²)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2인 이하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 기준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준

구 분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준
1인 창조기업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직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에서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대상자를 1순위로 선발하고 미달시 2순위자 선발
- 지역의 특화를 위해 디자인, IT 업종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우대

■ 1순위 대상자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 분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 고
	3인 이하 가구	2,367,300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통계청 발표)
소 득	<p>○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 '15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5.01.0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5.1.1 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5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5.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 '14년도 전체 휴직 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이 경우에도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p>○ 사업자 : '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이후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자료제출) <p>○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15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p> <p>○ 무직자 : '15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2015.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 ※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연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 소득 산정후 합산 		

구 분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5,0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 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p>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p> <p>※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p> <p>※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p> <p>※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p> <p>※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p>

■ 2순위 대상자 소득 보유기준(아래 소득기준 이상 세대는 신청 할 수 없으며 자산보유 기준은 없음)

구 분	소득 기준						
소 득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월평균소득기준</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3인 이하 가구</td> <td>3,304,300원</td> <td>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통계청 발표)</td> </tr> </tbody> </table>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 고	3인 이하 가구	3,304,300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통계청 발표)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비 고				
3인 이하 가구	3,304,300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통계청 발표)					
<p>○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 '15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p>- '15년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p>- '15.01.0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5.1.1 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p>- '15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5.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p> <p>※ '14년도 전체 휴직 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p> <p>- 회사의 분할, 합병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사업자등록번호 등)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이 경우에도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계열사간 인사이동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p> <p>○ 사업자 : '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15.1.1이후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자료제출)</p> <p>○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15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p> <p>○ 무직자 : '15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2015.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p> <p>※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p> <p>※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연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 소득 산정후 합산</p>							

※ 가구원수가 3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 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 태아수 포함

3. 입주신청

- 신청기간: 2016. 2. 18.(목) ~ 2. 22.(월) 16:00
- 접수처: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imus07@sd.go.kr)
 -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되 발송 후 접수여부 전화확인 요망
-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① 입주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② 사업계획서 <별지 2호 서식>
 - ③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 ④ 주민등록등본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장 가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여부 확인)
 - ②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 문의전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주거환경개선팀(2286-6578)

4. 입주자 선정

- 1인 창조기업, 소득 자산, 무주택 2인 이하 가구 등 자격, 사업계획 등을 SH공사서울지방중소기업청성동구청이 심의하여 입주 순위 선정
- 사업계획서등의 서면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면접 심의도 있을 수 있음
- 지역의 특화를 위해 디자인, IT 등 정보 및 기술서비스의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우대

가점사항	배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등	1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및 성동구 내 기관 대회 입상자(지방청 시행대회 및 행사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
최근 2년 이내 창업교육 이수자	1
여성(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1

5.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

- **당첨자 발표:** 2016. 3. 7.(월) / 성동구 홈페이지
- **동호배정:** 2016. 3. 8.(화)
 - 주택의 유형은 입주희망을 반영하되, 입주심사결과 고득점자에게 동호배정의 우선권 부여
 - 공급호수의 150% 범위내에서 입주자 평가성적 순위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까지임)
 -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6. 계약기간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SH공사 1층 맞춤임대부
- **계약체결:** 2016. 3. 10.(목) ~ 3. 14.(월) 10:00 ~ 16:00
- **구비서류**
 -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계가족이 대리를 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입주기간 :** 2016. 3. 15. ~ 4. 30.
 - 보증금 및 임대료납부 후 SH공사 성동권역주거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입주
 - 문의: 6909-9340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 세대주, 성동구 계속 거주, 1인창조기업(예비창업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7.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각 순위별 사업계획서 심의 및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당첨자는 30일 이내에 당첨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입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구청 또는 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성동구청에서 1인창조기업 요건 및 실적 등 입주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최종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자격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구 및 1인 창조기업의 실적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 및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며 1인창조기업에 대한 실적평가 등의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입주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기업은 사업장관련 변경사항 발생시(1인창조기업 요건, 사업종류, 사업장 등) 해당내용을 성동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로서,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성동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예정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취소)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1인창조기업인 지원업무, 기타 필요시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 SH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등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 1인 창조기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입주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1인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당첨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입주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사업계획서

1. 창업 동기 및 역량

자기소개 및 창업 동기	자기 소개 및 창업동기 기재
창업역량	창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준비한 사항 기재(자격, 특허 등)

2. 창업계획

창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해 기재

3. 지역사회공헌 및 입주후 공동체 활동계획

지역사회 공헌계획	입주 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사업 및 기능재부 계획 등 기재
공동체활동계획	입주 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SH공사, 성동구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원룸형 임대주택 입주지원관련 평가,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16년 2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